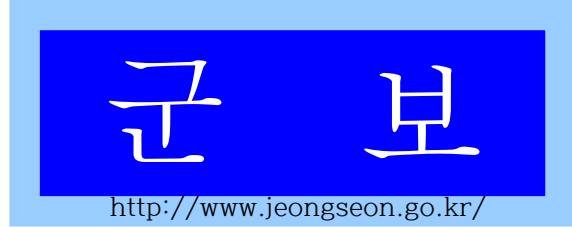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2호 2021. 11. 17.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4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1-14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1-145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중로3-A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변경)인가 고시.....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302호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 · 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1-133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6
○ 정선군 공고 제2021-133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0
○ 정선군 공고 제2021-1342호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 정선군 공고 제2021-134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 정선군 공고 제2021- 134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8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4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36호(2019. 2. 28)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1 ~ 애산리 55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 사업

나.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 시행	
도로	중로2-8호선	L=664m, B=14~33m	L=664m, B=14~33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건설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361-1	제	16,943	225	-	기획재정부	-	-	-
2	정선읍 봉양리	113-1	전	174	174	-	기획재정부	-	-	-
3	정선읍 봉양리	114-4	전	645	645	-	기획재정부	-	-	-
4	정선읍 봉양리	112-1	천	198	198	-	국토교통부	-	-	-
5	정선읍 봉양리	109-2	전	1	1	-	기획재정부	-	-	-
6	정선읍 봉양리	114-2	제	1,031	158	-	국토교통부	-	-	-
7	정선읍 봉양리	106-1	전	134	134	-	기획재정부	-	-	-
8	정선읍 봉양리	107-3	전	567	567	정선읍 봉양리 1*3	고*영	-	-	-
9	정선읍 봉양리	107-5	전	510	510	정선읍 봉양리 1*3	고*영	-	-	-
10	정선읍 봉양리	108-2	묘	232	232	-	기획재정부	-	-	-
11	정선읍 봉양리	101-7	전	1,038	1,038	-	기획재정부	-	-	-
12	정선읍 봉양리	919	천	693,261	3,169	-	국토교통부	-	-	-
13	정선읍 애산리	552-2	천	536	299	-	국토교통부	-	-	-
14	정선읍 애산리	552-1	천	248	30	-	국토교통부	-	-	-
15	정선읍 애산리	556-3	임	162	87	-	산림청	-	-	-
16	정선읍 애산리	550-5	천	152	127	-	국토교통부	-	-	-
17	정선읍 애산리	550-4	제	263	121	-	국토교통부	-	-	-
18	정선읍 애산리	550-12	대	190	19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19	정선읍 애산리	549-7	임	102	102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20	정선읍 애산리	549-9	전	112	112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21	정선읍 애산리	528-4	전	16	16	정선읍 신월리 3*3	운*호	-	-	-
22	정선읍 애산리	530-7	전	164	164	정선읍 용탄리 1*4	유*규	-	-	-
23	정선읍 애산리	531-4	전	122	122	정선읍 녹도길 3*-1	정*옥	-	-	-
24	정선읍 애산리	533-9	전	34	34	정선읍 애산리 5*9-2	홍*순	-	-	-
25	정선읍 애산리	533-10	전	1	1	정선읍 애산리 5*9-2	홍*순	-	-	-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26	정선읍 애산리	533-8	잡	321	321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27	정선읍 애산리	534-1	창	291	291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28	정선읍 애산리	535-8	대	445	445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29	정선읍 애산리	535-9	전	30	30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30	정선읍 애산리	520-6	임	30	30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5*8	박*자	-	-	-
31	정선읍 애산리	592-1	천	149,819	1,163	-	국토교통부	-	-	-
32	정선읍 애산리	553	천	873	46	-	국토교통부	-	-	-
33	정선읍 애산리	556-1	천	2,198	93	-	국토교통부	-	-	-
34	정선읍 애산리	556-4	전	162	25	-	기획재정부	-	-	-
35	정선읍 애산리	550-3	전	76	50	-	기획재정부	-	-	-
36	정선읍 애산리	557-5	제	132	1	-	국토교통부	-	-	-
37	정선읍 애산리	557-7	제	12	12	-	국토교통부	-	-	-
38	정선읍 애산리	549-10	임	6	6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3	주식회사 선	-	-	-
39	정선읍 애산리	549-11	전	1	1	횡성읍 한우로 6*3	주식회사 선	-	-	-
40	정선읍 애산리	548-3	전	365	365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6 616-1*07	유*천	-	-	-
41	정선읍 애산리	529-2	전	204	204	정선읍 신월리 3*3	윤*호	-	-	-
42	정선읍 애산리	560-8	공	222	222	-	정선군	-	-	-
43	정선읍 애산리	560-9	공	8	8	-	정선군	-	-	-
44	정선읍 애산리	532-2	전	781	781	강릉시 포남동 898-17 103-4*2	유*수의2	-	-	-
45	정선읍 애산리	539-2	임	308	65	정선읍 애산로 *5	함*남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46	정선읍 애산리	538-1	대	362	111	강릉시 입암동 506-9 1*05	조*형	주식회 사국민 은행	-	근저당권
계				873,482	12,699					

정선군 고시 제2021-14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36호(2019. 2. 28)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1 ~ 애산리 55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 사업

나.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8)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 시행	
도로	중로2-8호선	L=664m, B=14~33m	L=664m, B=14~33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건설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361-1	제	16,943	225	-	기획재정부	-	-	-
2	정선읍 봉양리	113-1	전	174	174	-	기획재정부	-	-	-
3	정선읍 봉양리	114-4	전	645	645	-	기획재정부	-	-	-
4	정선읍 봉양리	112-1	천	198	198	-	국토교통부	-	-	-
5	정선읍 봉양리	109-2	전	1	1	-	기획재정부	-	-	-
6	정선읍 봉양리	114-2	제	1,031	158	-	국토교통부	-	-	-
7	정선읍 봉양리	106-1	전	134	134	-	기획재정부	-	-	-
8	정선읍 봉양리	107-3	전	567	567	정선읍 봉양리 1*3	고*영	-	-	-
9	정선읍 봉양리	107-5	전	510	510	정선읍 봉양리 1*3	고*영	-	-	-
10	정선읍 봉양리	108-2	묘	232	232	-	기획재정부	-	-	-
11	정선읍 봉양리	101-7	전	1,038	1,038	-	기획재정부	-	-	-
12	정선읍 봉양리	919	천	693,261	3,169	-	국토교통부	-	-	-
13	정선읍 애산리	552-2	천	536	299	-	국토교통부	-	-	-
14	정선읍 애산리	552-1	천	248	30	-	국토교통부	-	-	-
15	정선읍 애산리	556-3	임	162	87	-	산림청	-	-	-
16	정선읍 애산리	550-5	천	152	127	-	국토교통부	-	-	-
17	정선읍 애산리	550-4	제	263	121	-	국토교통부	-	-	-
18	정선읍 애산리	550-12	대	190	19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19	정선읍 애산리	549-7	임	102	102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20	정선읍 애산리	549-9	전	112	112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0	주택도시보 증공사	-	-	-
21	정선읍 애산리	528-4	전	16	16	정선읍 신월리 3*3	운*호	-	-	-
22	정선읍 애산리	530-7	전	164	164	정선읍 용탄리 1*4	유*규	-	-	-
23	정선읍 애산리	531-4	전	122	122	정선읍 녹도길 3*-1	정*옥	-	-	-
24	정선읍 애산리	533-9	전	34	34	정선읍 애산리 5*9-2	홍*순	-	-	-
25	정선읍 애산리	533-10	전	1	1	정선읍 애산리 5*9-2	홍*순	-	-	-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26	정선읍 애산리	533-8	잡	321	321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27	정선읍 애산리	534-1	창	291	291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28	정선읍 애산리	535-8	대	445	445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29	정선읍 애산리	535-9	전	30	30	정선읍 애산로 *9	홍*순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30	정선읍 애산리	520-6	임	30	30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5*8	박*자	-	-	-
31	정선읍 애산리	592-1	천	149,819	1,163	-	국토교통부	-	-	-
32	정선읍 애산리	553	천	873	46	-	국토교통부	-	-	-
33	정선읍 애산리	556-1	천	2,198	93	-	국토교통부	-	-	-
34	정선읍 애산리	556-4	전	162	25	-	기획재정부	-	-	-
35	정선읍 애산리	550-3	전	76	50	-	기획재정부	-	-	-
36	정선읍 애산리	557-5	제	132	1	-	국토교통부	-	-	-
37	정선읍 애산리	557-7	제	12	12	-	국토교통부	-	-	-
38	정선읍 애산리	549-10	임	6	6	황성군 황성읍 한우로 6*3	주식회사 선	-	-	-
39	정선읍 애산리	549-11	전	1	1	황성읍 한우로 6*3	주식회사 선	-	-	-
40	정선읍 애산리	548-3	전	365	365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6 616-1*07	유*천	-	-	-
41	정선읍 애산리	529-2	전	204	204	정선읍 신월리 3*3	윤*호	-	-	-
42	정선읍 애산리	560-8	공	222	222	-	정선군	-	-	-
43	정선읍 애산리	560-9	공	8	8	-	정선군	-	-	-
44	정선읍 애산리	532-2	전	781	781	강릉시 포남동 898-17 103-4*2	유*수외2	-	-	-
45	정선읍 애산리	539-2	임	308	65	정선읍 애산로 *5	함*남	정선신 용협동 조합	-	근저당권
46	정선읍 애산리	538-1	대	362	111	강릉시 입암동 506-9 1*05	조*형	주식회 사국민 은행	-	근저당권
계				873,482	12,699					

정선군 고시 제2021-145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중로3-A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1225(2019. 11. 20)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중로 3-A호선)에 대하여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준공예정일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사업

나)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3-A	L=400m, B=12~15m	-	L=400m, B=12~15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성암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양순모

나)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39, 1층

5. 사업기간(변경)

가) 착 공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 2021. 12. 31 → 변경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불임(변경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 개발주식 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 개발주식 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302호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42번지 일원
- 다. 면 적 : 1,831,193.2㎡(변경없음)
- 라. 주요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 나. 공람기간 : 2021. 11. 04 ~ 2021. 11. 19(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

4.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공람장소 비치

5.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132) 및 문화관광과(033-560-2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숙암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람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숙암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1. . .
공 람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람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숙암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공람·공고 열람자 등록부

[illegible]

정선군 공고 제2021-133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남면 일원
3. 규 모 : 도로 변경 8개소, 주차장 신설 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신동읍행정복지센터, 남면행정복지센터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1. 11. 12. ~ 2021. 11. 29.)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람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1. . .
공 람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람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33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30번지 일원

다. 면 적 : 11,046m²

라. 주요변경내용 : 군계획시설(정수장) 신설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2021. 11. 15 ~ 2021. 11. 30(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

4.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 공람장소 비치

5.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도면 : 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

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람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1. . .
공 람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람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342호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를 규정 함
- 나. 시설의 운영(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및 이용의 제한(안 제7조)을 규정 함
- 다. 시설의 입장료(안 제6조)를 규정 함
- 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안 제8조)를 규정 함
- 마. 시설의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안 제9조)을 규정 함
- 바. 시설의 위탁관리(안 제10조)를 규정 함
- 사. 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안 제11조)을 규정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시설국 문화관광과
- ▶ 전 화: 033 - 560 - 2548
- ▶ 팩 스: 033 - 560 - 2593
- ▶ 이메일: jodongrim1109@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유산 콘텐츠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아리나루관으로 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군 아리나루관”이란 정선아리랑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물과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존·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및 설날·추석 당일
3.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6.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내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체험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시설의 운영, 사용 및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변상책임 및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관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서식)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정선군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분							
		신 설	○	강 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정선군 시설국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아리랑 담당 최선복, 주무관 심혜선								
4. 근거법령 등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지방자치법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시설 방문객 및 이용자								
6. 규제존속기한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 기간동안								
7. 현행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흥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6.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에 관한 구체적 내용 규정 ○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내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체험관 내 시설물 및 전시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복구 의무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근거 규정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교육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관리, 방문객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입장 제한 및 퇴장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체험관 내·외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보수 및 복구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 1-2) 규제의(신설·강화) 필요성 ○ 이용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시설물 및 전시물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교육체험관 내부에 전시되는 전시모형 및 전시물품 등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인 유물 및 전시물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2. 규제대안 검토	○ 본 규정은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다른 규제대안은 없다고 판단됨
3. 비용과 편익분석/비교	○ 해당없음
4.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항 목	분 석 내 용
5. 규제의 적정성	○ 규제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유사사례,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 : 해당없음 ○ 상위법 위임근거가 있는지, 상위법 위임범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 : 해당없음 ○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적정성 : 해당없음
6. 이해관계자 협의	○ 규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규제집행의 실효성	○ 입장 제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 시설 방문자 및 관람객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 이용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시설물 및 전시물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공문화시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교육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인 동계올림픽 및 아리랑 관련 유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손해배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선군 공고 제2021-134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021.01.12.) 및 시행(2022.01.13.)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시행 전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1명 → 650명 (감 11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50명 → 650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 0명 (감 11명)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의회사무과를 삭제

3. 예고기간 : 2021. 11. 12. ~ 11. 21.(1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3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jung770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661명”을 “650명”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삭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0	650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5	625				
4급	4	3		1		
4급·5급	0	0		0		
5급	31	15	0	4	1	9
6급 이하 계	591	59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5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5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삭제)

정선군 공고 제2021- 134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021.01.12.) 및 시행(2022.01.13.)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시행 전 관련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61명 ⇒ 총 650명 (감 11명)

나. 조정내역

- ☐ 의회사무과 감원 : 11명
- (5급 2명) 행정 2명
 - (6급 3명) 행정 3명
 - (7급 1명) 행정 1명
 - (8급 3명) 행정 1명, 운전 1명, 속기 1명
 - (9급 2명) 운전 1명, 시설관리 1명

3. 예고기간 : 2021. 11. 12. ~ 11. 21.(1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3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jung770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